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호 중 “유통기한”을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다목, 제2호다목, 제3호다목, 제4호가목4) 및 같은 호 다목3), 제5호나목 및 제6호나목 전단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3호 단서 중 “유통기한”을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별표 7 I. 일반기준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,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

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II.

개별기준의 4. 식품접객업의 가목1)가)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1호가목1)나) 중 “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규칙 별표 1 제5호”로 한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1호가목4)·6), 같은 호 라목4)가), 같은 호 라목4)

나)(1)·(2) 및 같은 호 라목4)다)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1호가목4)과) 중 “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규칙 별표 1 제5호”로 한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2호가목1)·5), 같은 호 나목1)가)·나) 및 같은 호 나목2)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3호가목1)다) 중 “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규칙 별표 1 제5호”로 한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3호가목1)3), 같은 호 다목4)가)(1)·(2) 및 같은 호 다목4)나)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3호다목4)차) 중 “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규칙 별표 1 제5호”로 한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4호가목2), 같은 호 나목2)가)(1)·(2) 및 같은 호 나목2)나)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별표 7 II. 개별기준 제4호나목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7 I 제14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7 II. 개별기준 제1호가목1)나), 같은 표 II. 개별기준 제1호라목4)파), 같은 표 II. 개별기준 제3호가목1)다), 같은 표 II. 개별기준 제3호다목4)차) 및 같은 표 II. 개별기준 제4호나목1)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) ① 제15조제2호, 별표 1,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·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”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유류를 말하며,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2031년 1월 1일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,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, 별표 9 II. 제7호가목 및 나목, 별지 제15호서식, 별지 제17호서식, 별지 제27호의2서식,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조제1항제4호, 제29조,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

호·제3호, 제40조제2항,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,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·마목·사목·버목 각 호 외의 부분·버목3)·터목 단서, 제4호라목, 별표 9 제3호다목5) 본문 및 같은 목 7), 별표 13 II. 제3호나목2)·4), 별표 14 제3호나목, 별지 제25호서식, 별지 제27호서식, 별지 제28호서식,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항제3호,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, 제59조제1항제2호, 제70조제1호다목,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, 제95조제1항 후단, 제98조제1호, 별표 1 제7호, 별표 17 제1호다목·타목, 별표 17 제2호바목, 별표 17 제3호자목, 별표 17 제4호가목, 별표 17 제5호마목, 별표 17 제7호카목, 별표 17 제8호라목·사목, 별표 22 제2호나목, 별표 23 II.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)가)·나) 및 같은 호 나목5)가)·나), 별표 27 제1호아목, 별지 제16호서식, 별지 제17호의2서식, 별지 제17호의3서식, 별지 제43호서식, 별지 제44호서식, 별지 제45호서식,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하고, 별표 23 I. 제17호를 삭제한다.

④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유통기한”을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0항제6호 중 “유통기한”을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4항 전단, 제51조의3제1항1호·제3호, 제51조의11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바목, 제51조의11제2항, 제51조의13제1항제2호 아목, 제51조의13제2항, 별표 2의4 제6호, 별표 8 제1호가목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별표 10 제8호나목1)마),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) 및 제15호버목,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,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호거목4) 및 제13호사목, 별표 12 제1호차목, 별표 12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), 별표 12 제4호카목(3),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, 별표 14의4 제2호나목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33호의4서식, 별지 제33호의7서식, 별지 제36호의2서식, 별지 제40호서식, 별지 제42호서식, 별지 제43호서식 중 “유통기한”을 각각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유통기한”을 “소비기한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회수·폐기처분 등의 기준)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, 압류·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5조(회수·폐기처분 등의 기준)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	2. ----- 소비기한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